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김영배·민형배·김남희

김승원 · 오기형 · 전현희

고민정 · 강유정 · 복기왕

박정현 · 허종식 · 송기헌

김원이 · 염태영 · 주철현

김태년 • 홍기원 • 서삼석

박홍근 · 강훈식 · 김현정

이용선 • 박민규 • 박희승

박선원 • 이훈기 • 정진욱

강준현 · 김성회 · 김남근

정성호 • 이워택 • 유호중

채현일 의원(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역당'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제1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지역당은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당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때에는 지역당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은 해당 후원금을 후원인이 지정한 지역당에 지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당후원회는 5천만원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중앙당후원회"를 각각 "중앙당후 원회·지역당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지역당"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을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시·도당과 정당선거사무소"를 "시·도당, 지역당 및 정당선거사무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당비) ① 정당은 소속 당원	제4조(당비) ①
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u>있다</u> .	<u>있으며,</u>
	지역당은 소속 당원이 납부한
	<u>당비를 해당 정당의 당헌·당</u>
	규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
	<u>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	
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
회를 포함한다)	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당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때에는 지역
	당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은 해당 후원금
	을 후원인이 지정한 지역당에
	지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u> 여야 한다.</u>

셰	12소(우원외의 모급ㆍ기구안)	工)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	금
	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	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	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	예
	금계좌 • 전화 또는 인터넷전	자
	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	<u></u>
	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	도
	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	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
	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ユ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생략)

<신 설>

- 3. ~ 6. (생 략)
- ② ~ ④ (생 략)
-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
1. (현행과 같음)
2. 지역당후원회는 5천만원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도 또한 같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
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
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
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
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
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
당후원회 및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

② (생략)

구국회의원후원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조 잔여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 (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 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 (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 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중앙당(중

·
1
중앙
<u>당후원회·지역당후원회</u>
2
중앙
당후원회·지역당후원회
3
J.
중앙
<u>당후원회·지역당후원회</u>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1주앗닷(중

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다) 또는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 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 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 회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 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 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 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 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 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 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 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 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 2. (생략)
- ② ~ ⑦ (생 략)
-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 략)
 - ② 제1항의 당헌ㆍ당규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2. (생략)
 -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 <u>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u> 다), 시·도당 및 지역당----

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u>다), 지역당</u>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 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

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 항

-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 (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④ (생략)
-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 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 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정당의 회계책임자
 -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 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u>시·도당</u>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③
시•도당 및 지역당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
1
가
<u>시·도당 및</u>
<u>지역당</u>
나
1 •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 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 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 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 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대통 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 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 도 2월 15일(시·도당은 1 월 31일)까지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 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 거 등에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 목에 의하고, 당해 시·도 당과 정당선거사무소는 나 목에 의한다.

2. ~ 5. (생략) ② ~ ⑥ (생 략)

	<u>시·도당 및</u>
	<u>지역당</u>
다.	
	<u>시·도</u>
	당, 지역당 및 정당선거사
	<u>무소</u>
2. ~	5. (현행과 같음)
② ~	- ⑥ (현행과 같음)